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7556

발의연월일: 2022. 9. 26.

발 의 자:고용진・김경만・김윤덕

김홍걸 • 문진석 • 신정훈

양기대 · 양정숙 · 유동수

이원욱 · 최종윤 · 한병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과세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99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이들이 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99퍼센트 경감하고,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, 자동차를 생산·판매하는 자도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반면 현행법은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를 생산·판매하는 자가 이들에게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, 간이과세자에 대한 택시용 자동차 판매를 기피하게 되어 안정적인택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동차판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용 자동차의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를 두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11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9호의2, 제9호의3"을 "제9호의2"로, "제8호"를 "제9호의3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"로, "적용하고, 제8호의3"을 "적용하며, 제8호의3"으로 한다.

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6조의11(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특례) ① 자동차를 생산·판매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판매업자"라 한다)가 106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동차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환급 및 세액공제의 계산방법,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l
호의2, 제5호, <u>제9호의2, 제9호</u>	제9호의2
<u>의3</u> 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	
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	
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	
하며, <u>제8호</u> 및 제8호의2는 201	<u>제9호의3은 2025년 12월 31</u>
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
체결된 것에만 <u>적용하고, 제8호</u>	<u>제8호</u>
<u>의3</u> 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	
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<u>적용하며, 제8호의3</u>
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06조의11(간이과세자에게 공
	급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

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특례) ① 자동차를 생산・판매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판매업자"라 한다)가 제106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차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환급 및 세액공제의 계산방법,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